

제목 : 추가약정서(전자채권담보대출용)

■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: 적용

■ 시행 예정일 : 2021.08.16

■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<생략> 제1조 (개별대출의 신청 및 실행) ① ~ ④ <생략> ⑤ 전자채권의 양도통지요청 및 대출신청, 대출실행은 당해 전자채권 지급기일 2영업일전까지만 가능하며 <u>개별대출의 만기일은 최장 180일 이내에서 당해 전자채권의 지급기일로 합니다.</u></p> <p>제2조 ~ 제3조 <생략> 제4조 (손실부담 및 면책) ① <u>다음 각호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귀 행에는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</u> 1. <u>입금계좌의 거래정지, 계좌이상 등의 사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</u> ② <u>본 약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귀 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5조 ~ 제10조 <생략></p>	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<좌동> 제1조 (개별대출의 신청 및 실행) ① ~ ④ <좌동> ⑤ 전자채권의 양도통지요청 및 대출신청, 대출실행은 당해 전자채권 지급기일 2영업일전까지만 가능하며 <u>개별대출의 만기일은 「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당해 전자채권의 지급기일로 합니다.</u></p> <p>제2조 ~ 제3조 <좌동> 제4조 (손실부담 및 면책) <u>입금계좌의 거래정지, 계좌이상 등의 사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의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, 본 약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귀 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u></p> <p>제5조 ~ 제10조 <좌동></p>	<p>은행영업일 용어변경 채권만기일 내용 변경</p> <p>문단전체변경</p>